

지하보도의 공공적 이용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2024. 09. 12(목)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



온라인 생중계 접속

- 제2대회의실은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2동[서소문청사 2동] 2층에 있습니다.
- 온라인 생중계 동시진행.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유튜브 접속

프로그램

개회사

김성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사회

이상훈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축사

김인제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좌장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발제

지하보도 사유화와 홈리스의 기본권

안형진 홈리스행동 활동가

지정토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재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로즈마리 거리홈리스 당사자

김태우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 도로시설과 지하시설팀 팀장

발제

지하보도 사유화와 홈리스의 기본권

안형진, 홈리스행동 활동가

2024.09.09

지하보도 사유화와 홈리스의 기본권

5

홈리스행동

안형진

홈리스행동

Contents

1	서론 1.1 공공장소의 변모 1.2 지하보도 공공성을 둘러싼 쟁점
2	서울역 지하보도 내 흠리스 강제퇴거 사건 2.1 사건 개요 2.2 사건의 성격
3	지하보도 사유화의 주요 문제 3.1 징후와 사례 3.2 사유화가 야기하는 문제들
4	지하보도의 ‘공공적 이용’을 위한 조건 4.1 임시피난권의 인정 4.2 모두의 지하보도를 위한 요건

서론

1

1-1 공공장소의 변모

1-2 지하보도의 공공성을 둘러싼 쟁점

1-1. 공공장소의 변모



Public space
공공장소

“사회의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단체에 공동으로 속하거나 이용되는 곳”

관습적으로 보면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실내외 개방 공간들이 공공 장소에 해당한다. 하지만 장소의 이용·관리 권한이 민간에게 할당된 국공유지나 공중의 이용이 많아 공적 영역과 부분적으로 맞닿아 있는 사유지 역시 **명목상으로는 공공장소에 포함된다.**

이때 '명목상의 공공장소'를 유형학적으로 분류하면, '**유사quasi 공공 장소**'라고 개념화할 수 있는데, 이곳은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사인이 장소 통제의 권한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자의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공공장소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비(非)배제성이 곧잘 훼손되곤 한다.

1-1. 공공장소의 변모

공공장소의 유형학



- 문제는 고도화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런 유사 공공장소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장소와 유사 공공장소의 경계 역시 흐릿해지고 있다는 것
 -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일찍이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국공유지 매각, 사유화(민영화), 외주화, 도심 고급화gentrification를 촉진하는 공공정책과 연관성을 가짐
- 적지재정을 이유로 국가가 소유·관리하던 장소나 공공시설물의 소유권 또는 운영권을 민간에 이전하는 경향
 - 민간투자를 통해 공공장소 내/외지에 상업시설 입점이 폭증하는 경향
 - 청소와 보안업무 같은 특징적인 요소를 민간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경향
- 이 같은 경향이 심화함에 따라 기존 공공장소의 공공재적 성격이 변모, 특정 사회계층 과이익집단을 위한 공적·사적 통제가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1-1. 공공장소의 변모

홈리스, 노점상을 비롯한 도시빈곤층의 존재를 ‘공공장소 재구조화의 필요성’ 내지 ‘도심낙후의 증거’로 제출하는 한국과는 달리 공공장소의 변모 과정에 주목하는 유럽과 북미지역의 연구자 그룹은 도시빈곤층 특히 ‘거리홈리스’가 공공장소에서 경험하는 현실을 ‘공공장소 재구조화의 결과’이자 ‘공공성 훼손의 징표’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연구자 집단의 입장과 해석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근래의 국제인권규범 역시 국가정책에 따른 공공장소의 성격 변화가 도시빈곤층의 삶에 어떤 해악을 입히는지 주목하고 있다.

1-1. 공공장소의 변모

2011년 제66차 UN총회 제출 보고서 A/66/265

- 빈곤층이 생존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취하는 여러 활동을 국가가 불법화·범죄화하는 경향이 심화하고 있음. 특히 홈리스를 주된 표적으로 삼는 이런 조치의 이면에는 **빈곤의 가시성을 줄여 투자와 개발을 유치하고 가난하지 않은 시민들을 도심으로 불러들이려는 동기가 자리하고 있음(para. 33-35)**
- 투자자와 개발업자, 부유한 계층에게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도시계획(토지 사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그 결과 빈곤층에 대한 분리와 배제가 증가하고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를 비롯한 사회권으로부터 빈곤층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음(para. 45-46)**

2024년 제56차 UN인권이사회 제출 보고서 A/HRC/56/61/Add.3

- 홈리스가 공공장소에서 행하는 생존을 위한 활동을 행정적·형사적 제재의 대상으로 삼는 조치가 여전히 **항행하고 있음**. 이는 여러 국제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para. 6, 10)
- **기존의 공공장소가 갈수록 준-공공장(semi-public) 내지 사유화(private)되어가고 있음**. 홈리스의 생존과 결부된 행위가 **실사 재산권 침해와 직결된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인권에 심각한 접근이 이념(para. 2-4).

1-1. 공공장소의 변모

탄광의 카나리아

이상의 논의는 오늘날의 공공장소가 점차 사익과 결부되고 있으며 이 변화가 공공장소 의존도가 높은 특정 사회집단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거리홀리스가 공공장소에서 겪는 이러한 경험적 현실이 '공공장소의 공적 이용'에 관한 논의에서 비가역적인 참조점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1. 서론

지하보도 사유화와 흙리스의 기본권

1-2. 지하보도의 공공성을 둘러싼 쟁점

2023. 9. 21.(목)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3년 9월 2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도시관리과장	허대근	02-2133-8370
도시관리지원팀장	고경곤	02-2133-8383

13 담당 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3쪽

서울시, 보행환경 대개조...지하철 출입구, 건물 내 이전·설치 시 혜택 확대

- 도심 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철 출입구 이설 시 주어지는 혜택 대폭 개선
- 지하철 출입구 설치 면적 외 연결통로 설치로 인한 공사비도 상한 용역을 적용
- 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구역 내 공공기여로 우선 검토
- 사업자, 사업자 특성에 따라 완화항목(용적률, 건폐율)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 지하보도(지하연결통로)는 대표적인 공공장소 가운데 하나로 과거 군사적, 경제적 이유로 대거 설치되었음. 그러나 2000년을 즈음하여 보행권이 부상하면서 설치·관리 측면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함
- 서울시의 지하연결통로 관리정책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함. 2000년대 이전까지 서울시내 지하연결통로는 **별다른 설치 원칙 없이 민간사업자의 개별 신청에 따라 개설됨**
- 2000년대 이후부터 지상부 보행환경 개선과 주변 시설 연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방침이 바뀜. 그 결과 지하연결통로가 사유건물과 연결하고 지하철 출입구 사이에 사유지에 들어서는 일들이 보편화됨. **‘보행권’이라는 공익과 ‘재산 가치’라는 사익의 결합이 행정적 합리성을 띄게 된 것**
- 이런 경향은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

1-2. 지하보도의 공공성을 둘러싼 쟁점

사익을 동원해 공익을 도모한다는 행정적 이상의 논리구조

- (공익) 시민들의 지상부 보행권 확보에 더해 물리적 건조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감축
- (사익) 건물 및 토지에의 접근성을 높여 공실 관리를 비롯한 수익성 확보, 재산(부동산) 가치 상승

이와 관련해 다음의 두 가지 쟁점을 검토해볼 수 있음

- ① 지하보도의 공공성은 보행권만으로 구성되는가?
- ② 공익과 사익은 등가교환인가?

1-2. 지하보도의 공공성을 둘러싼 쟁점

① 지하보도의 공공성은 보행권만으로 구성되는가?

< 점용허가를 위한 세부지표 >

- ❖ 국·공유지인 도로 하부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과 그에 따른 공공안전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 ❖ 경제·교통적 약자의 이익을 제고하거나,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 계층이나 소수자를 배려하는 공익적 측면이 존재해야 도로점용허가 가능 (허가여부는 '도로점'상, 도로관리청인 구청의 제청행위임)
- ❖ 사회·경제·교통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켜, 거시적으로 사회·공공의 이익을 제고하는 공공복리적 측면을 지님
- ❖ 따라서, 통로를 통해 연결되는 사유건물 내 공공용 어린이집, 청년창업센터 등과 같은 '공익시설'이 입지하거나,
- ❖ 공공(公衆)의 활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지상부의 보행환경이 열악하여 지하부 연결이 필요한 경우(교통전문가 심사)에 통로를 설치하고,
- ❖ 필요시 연결부(역사 또는 지하도상가) 인근에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한 것임

도로점용허가를 통한 연결통로 설치 시 기준

- 지하보도는 재난 시 대피시설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보행로'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 지하연결통로와 사유건물의 연계를 추진하는 서울시의 행정 역시 지상 보행로 확보라는 확고한 명분을 가짐
- 이렇듯 보행권에 국한하여 공공성을 논하게 되면, 이 공간에서 상당 시간 머물거나 정주하는 행위는 당연히 규제 대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음. 이른바 보행 우선주의Pedestrianism에 해당하는 이런 관점은 그 자체 독자적인 논리체계를 갖추고 있고 외견상 강력한 합리성을 지니고 있음
- 그렇지만 이 관점이 **철저히 가치중립적인 것은 아님. 늘 행정이 의도한 대로 해석되지 않으며, 모든 시민에게 균등한 결과를 가져 오지도 않음**
- 서울시의 행정 지침 역시 지하연결통로의 공공성(공익성)을 보행권에 국한된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음. 또한 공간 조성의 초기 의도와 다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기도 함

1-2. 지하보도의 공공성을 둘러싼 쟁점

② 공익과 사유는 등가교환인가?

- 사유를 동원한 결과가 언제나 공익 실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심지어 보행권 보장(보행환경 개선)이라는 절대적 명분마저 '사익' 때문에 훼손되기도 함
- 만약 지하보도의 공공성 내지 공익성의 범주가 '보행권' 너머의 요소까지 담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면, 지하보도라는 공간이 사익과 결착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하철역 전체 출구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 7개 역, 10곳의 출구에는 아직도 물막이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출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출구 관리를 지하철역과 맞닿은 민간 건물 측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 주변 건물이 지하철역으로 출구를 새롭게 내는 경우, 통상 서울교통공사가 아닌 해당 건물주가 출구를 관리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비용 부담을 꺼리거나 수해 취약건물로 인식될까 걱정해서 물막이판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 협약을 하면서 민간 측에서 유지·관리하기로 했는데, 공문을 보내서 물막이판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화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민 목숨 걸린 지하철 출구…건물주들한테 달렸다」

SBS, 2024년 8월 19일자

”

서울역 지하보도 내 홈리스 강제퇴거 사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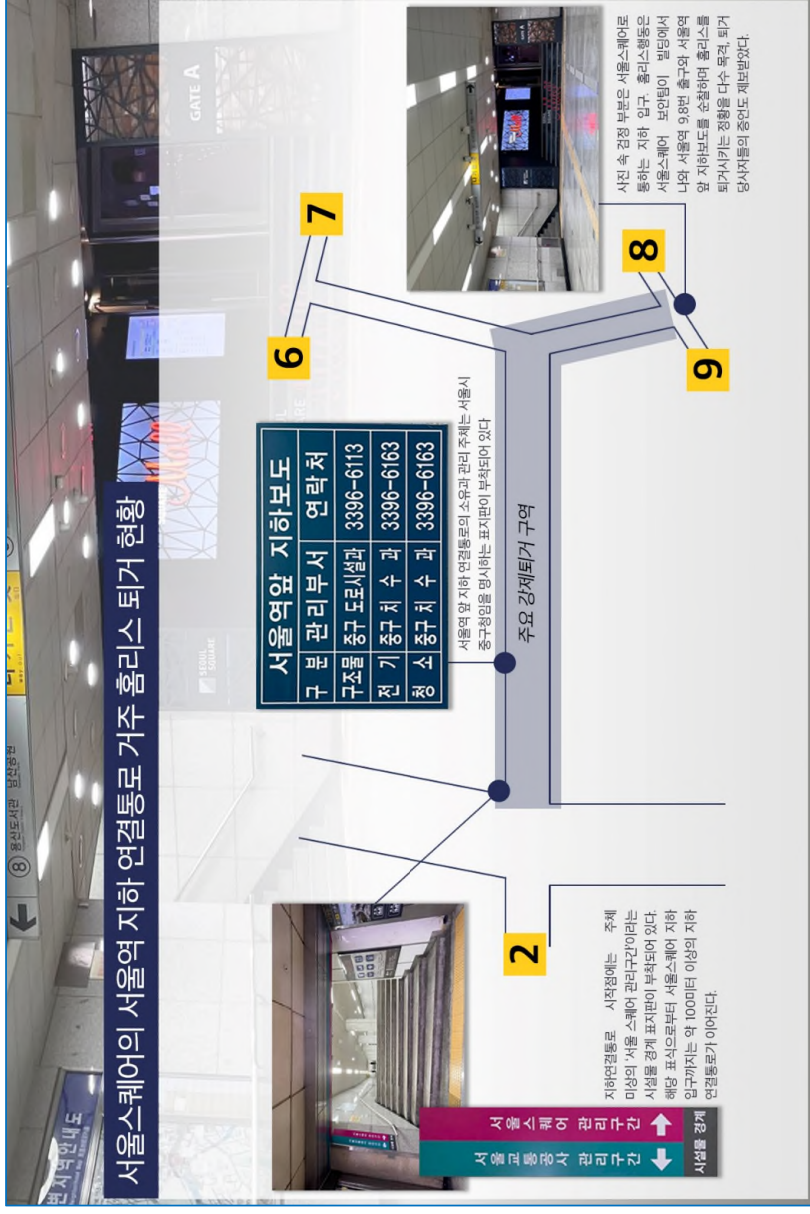
- 2-1 사건 개요
- 2-2 사건의 성격

2. 서울역 지하보도 내 홈리스 강제퇴거 사건

지하보도 사유화와 홈리스의 기본권

2-1. 사건 개요

- ‘서울역 지하보도 내 홈리스 강제퇴거 사건’이란 서울역 지하연결통로에서 민간기업에 의해 벌어진 일련의 사적 제재 행태를 말함
- 사적 제재가 발생한 문제의 장소는 지하철 서울역과 서울스퀘어 방향 출구(8,9번 출구) 사이에 놓인 연결통로로, 이곳의 소유 및 관리주체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임
- 지난해 3월부터 서울스퀘어 측은 해당 구역에 보안요원을 배치, 상시 순찰을 통해 **외간상 홈리스로 보이는 시민들의 출입과 통행을 막고 퇴거를 종용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있음**



사적 제재 발생 장소

2. 서울역 지하보도 내 흡리스 강제퇴거 사건

지하보도 사유화와 흡리스의 기본권

2-1. 사건 개요

- 서울스퀘어 측이 밝힌 강제퇴거 · 출입 제지 조치의 이유는 건물에 출입하는 직원들에게 위험이 된다는 것
- 강제퇴거 · 출입제지 조치의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서울스퀘어 측 보안 요원들은 서울스퀘어의 영업시간 종료 시각(22시)까지 해당 장소에 머물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응하지 않는 경우 물리적 행사를 암시하기까지 함

“



직원이 날보더니 이 시간엔 기본권 옆에도 있지 밀러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무슨 권리로 나가라 마라 하느냐 따졌더니, 화사 방침이라 했습니다. 나가지 않고 버티니 “저희가 들어서 옮겨드려요?”라고 합니다. (...) 직원들이 이렇게 하니 전 지하도가 스쿼어 땅인 줄만 알았습니다.”

사적 제재 피해자의 기자회견(2023. 6. 20.) 발언 중

2. 서울역 지하보도 내 흡리스 강제퇴거 사건

지하보도 사유화와 흡리스의 기본권

2-2. 사건의 성격

① 공공장소의 사유화

- 서울스퀘어 측의 출입제지·강제퇴거 조치가 이루어진 서울역 앞 지하연결통로(지하철 서울역~8,9번 출구 방향)는 <국토계획법>에 의거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자체의 관할

20

하에 있는 곳

- 기존 판례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서울시 행정 지침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은 “공중의 100% 개방성 및 (...) 공적·공공적 사용에 제공”될 때 설치 가능하며 준공 후 지자체에 무상귀속하도록 규정돼 있음

- 가장 직관적인 수준에서 말한다면 이 사건은 공공재인 **지하보도를 민간기업이 사유화한 것으로, 사적 이익집단이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장소를 배타적으로 통제하고 특정 시민들의 행위에 제약을 가한 사건임**

- 다시 말해, 사적 권력이 공적 영역을 부당하게 침해함으로써 특정 사회집단의 장소 접근성을 박탈하고, 공공장소의 정의상 원칙(비배제성)은 물론 법과 행정의 세운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사건인 것

2. 서울역 지하보도 내 흡리스 강제퇴거 사건

지하보도 사유화와 흡리스의 기본권

2-2. 사건의 성격

② 위력을 동반한 사적 제재

- 서울스퀘어 측은 해당 지하보도 내 거리흡리스가 “직원에게 위협이 된다”, “건물출입자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온다”는 주장을 하며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음
- 실제적인 위협 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설사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정해진 형사 사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임. 문제의 지하연결통로는 서울스퀘어의 부속시설물이 아니며 서울스퀘어의 조치가 불법행위자를 특정하여 이뤄진 것도 아니기에 합당한 경비업무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즉, 서울스퀘어 측의 조치는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장소에서 私人집단이 시민에게 위력을 행사한 불법행위일** 따름임

“

우리시에서는 귀 단체의 요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울스퀘어 보안팀 등을 만나 소속 직원들이 노숙인에 대한 차별이나 퇴거 조치, 폭언 등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건물 주변에서 노숙인을 포함한 누군가가 건물을 출입하는 시민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보안팀 관계자가 직접 해당 노숙인에 대해 조치하기 보다는 해당지역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도록 112 신고를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서울시의 민원 답변(2023. 6. 28.) 내용 中

[참고] <경비업법>은 경비업무 수행 시 타인에 대한 위력 과시, 물리력 행사를 해선 안 되며 경비업무의 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를 지시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제15조의2). 특히,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행정처분(제19조)·벌칙(제28조) 조항까지 두고 있음

지하보도 사유화의 주요 문제

3

3-1 지하보도 사유화 - 징후와 사례

3-2 사유화가 야기하는 문제들

3. 지하보도 사유화의 주요 문제

지하보도 사유화와 홈리스의 기본권

3-1. 징후와 사례

민간기업(서울스퀘어)에 의해 촉발된 '서울역 앞 지하보도 내 홈리스 강제퇴거 사건'은 사유화된 공공장소의 특징(사적 통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문제는 상기 사건이 예외적이거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임

공공장소에서의 제재 경험과 주된 제재 주체 (2017년)

행위 유형 (경험자 비율)	주된 행위 주체 (비중)
퇴거강요 (61.1%)	민간 경비원 (50.9%)
출입제지 (68.9%)	민간 경비원 (61.3%)
공공시설물 이용제지 (33.3%)	민간 경비원 (66.7%)
언어적 위협 (50.0%)	민간 경비원 (46.7%)
물리적 위협 (23.3%)	민간 경비원 (57.1%)
폭행 (11.1%)	민간 경비원 (50.0%)

자료: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2017)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이 2017년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 거리홈리스가 이용 중인 공공장소에서 이런저런 제재를 가했던 주된 주체는 '민간(시설) 경비원'인 것으로 나타남. 모든 행위 유형에서 민간 경비원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한편, 거리홈리스의 공공장소 퇴거 경험은 2011년 국가인권위 조사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공공장소 퇴거 경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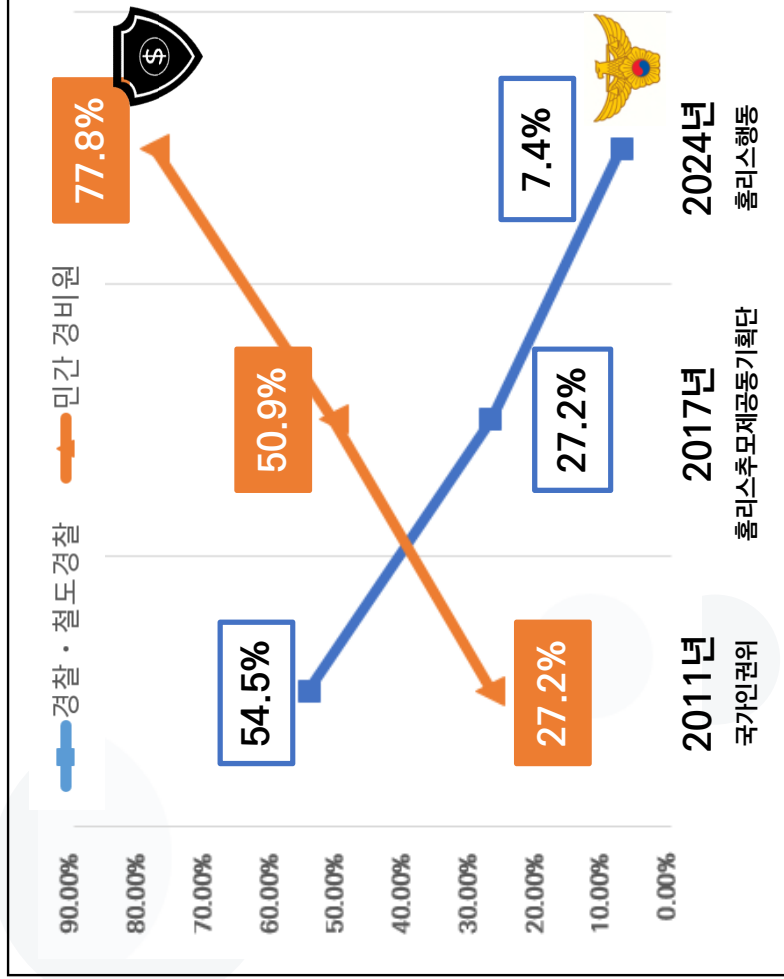
구분	퇴거 경험
2011년 (국가인권위)	25.0%
2017년 (홈리스추모제기획단)	61.1%

자료: 국가인권위(2011),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2017)
*주: 조사 대상지역은 동일하지 않으며, 완전히 동일한 질문도구를 통해 얻어진 측정값이 아님

3. 지하보도 사유화의 주요 문제

지하보도 사유화와 홈리스의 기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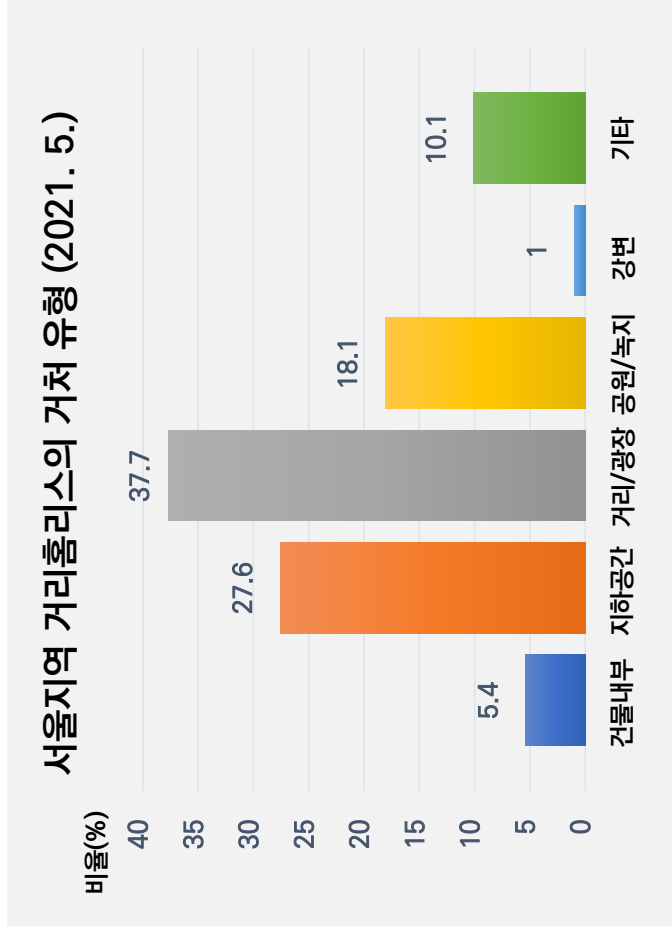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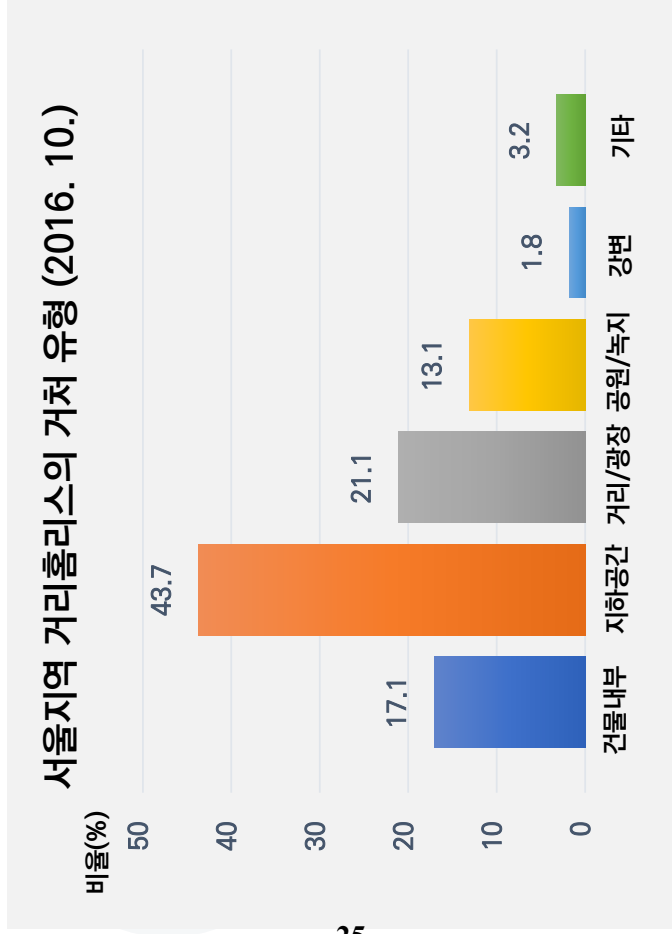
3-1. 징후와 사례



- 거리홈리스를 퇴거조치하는 수행 주체의 변화는 공공장소에서 사적 통제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징후적으로 보여줌
- 경찰·철도경찰의 비중은 2011년 54.5%에서 2024년 7.4%로 크게 낮아진 반면, 민간경비원의 비중은 2011년 27.2%에서 2024년 77.8%로 크게 높아짐
- 같은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리홈리스의 경찰전속 경합을 참조할 때, 이 같은 결과는 경찰활동의 변화 때문이 아닌 거리 홈리스와 민간경비원 간 공공장소 내 접촉 빈도와 갈등 민도가 누증된 결과로 해석함이 타당함

공공장소 퇴거조치의 수행주체 비중 변화 (2011~2024)

3-1. 징후와 사례



- 보건복지부의 제1차(2016), 제2차(2021) ‘노숙인 등 일시집계조사’ 결과, 서울지역 거리홈리스의 주된 거처는 지하보도인 것으로 나타남
- 지하보도가 거리홈리스의 주요 거처 유형 가운데 하나인 점, 관리주체와 물리적 관리 범위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앞의 분석에서나 타난 추세(사적 통제의 증가)와 다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움

*1차, 2차 조사의 결과값이 다소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사 시점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계절적 요인). 이는 날씨가 추워질수록 지하공간의 중요성이 높아짐을 시사함

3-1. 징후와 사례

'종로서적' 14년 만에 부활... 종로타워 지하에 23일 개장

인력 2016.12.22 오전 8:42 · 수정 2016.12.22 오전 8:43 기사원문

박상현 기자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국내 대형서점의 효시인 '종로서적'이 14년 만에 종로1가 사거리에서 부활한다.

22일 출판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순까지 반디엔루니스 종로타워점이 있던 종로타워 지하 2층에 종로서적이 23일 개장한다.

종로서적은 예수교사회가 1907년 종로2가에 문을 연 서점으로, 문화공간이자 만남의 장소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교보문고와 영풍문고가 종로에 잇따라 들어서고, 온라인서점이 등장하면서 2002년 여름 월드컵 열기 속에 조용히 사라졌다.

이후 출판계에서는 95년 역사의 종로서적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번 결정에 결실을 보게 됐다.

사례 ①

- 지하보도 사유화의 구체적인 사례 역시 적지 않음. 종로타워와 연결한 중 각역 지하통로에서 2016년 12월 발생한 사건이 대표적
- 본래 종로타워는 소유주들 간 지분 문제로 시설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2016년 초 외국계 기업이 종로타워를 사들여 단일 소유주가 되면서 상황이 급변함. 당시 '도시재생'을 강조하며 민간개발 투자유치에 열을 올렸던 종로구청은 '종로서적 복원 계획'을 발표, 종각역 하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
- 종로서적 개장과 동시에 종로타워 측은 거리흙리스의 지하연결통로 출입과 공중화장실 사용을 제지하는 한편, 여러 기관과 단체의 상담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함
- 이 사례는 **상업시설 확충을 중심에 둔 지하보도 건조환경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지 여실히 보여줌

3-1. 징후와 사례



출처=홈리스행동(2017년 2월 촬영)

사례 ②

- 지하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은 아니지만, 지난 2017년 용산역 구름다리에 서 발생한 홈리스 퇴거조치 사건 역시 유의미한 참조 사례라 할 수 있음
- 용산역 구름다리는 SDC 호텔 준공 이전까지 용산역에서 전차상가 방향 자상부로 이어지는 공중연결통로였음. 본래 철도공단이 관리를 맡고 있던 이 통로는 수 명의 홈리스가 저녁 시간마다 이용하는 정기적인 잠자리 장소였고 낮 시간에는 소규모 좌판 노점상이 상주하는 곳이었음
- SDC 준공을 앞두고 공중연결통로는 역과 SDC를 연결하는 통로로 구조가 변경됨. 2017년말 호텔 개장 직후 SDC 측은 연결통로 양 출입구에 상주 보안요원을 배치, 홈리스의 통로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함. 공중연결통로의 유지관리 책무가 SDC 운영사인 서부티앤디에 위임되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
- 이 사건은 '보행환경 개선'을 이유로 공공 연결통로를 사유건물과 연계하고 공간의 관리책무를 사기업에 위임하는 방식이 본래 행정의 의도하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

3. 지하보도 사유화의 주요 문제

지하보도 사유화와 홀리스의 기본권

3-2. 사유화가 야기하는 문제들 ①

- 지하보도의 사유화는 **장소 접근에 있어 계층 간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별적임. 통제의 초점이 ‘공공질서’가 아닌 특수 이해관계자들의 편익과 공간의 미적·부동산가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는 필연적인 결과임
- **통제 대상을 식별하는 것이 사인의 몫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함. 통제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기초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경우 제재의 범주와 대상 역시 광범위할 수밖에 없음
- 지하보도의 사유화는 **공간을 찾는 목적 자체가 다른 시민들 간 접촉 빈도를 현저히 증가시킴**. 이 역시 특정 계층에 속한 시민들의 장소 접근을 제약하는 요인이 됨




출처=위키피디아

3-2. 사유화가 야기하는 문제들 ②

- 지하보도는 여러 도시빈곤층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인 동시에 지자체가 여러 정책 사업의 공간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곳
- 거리홈리스에게 지하보도는 특별한 의미를 가짐. 적정 주거로의 접근이 쉽지 않고 미땅한 실내공간을 찾지 못한 거리홈리스에게 지하보도는 임시 피난처의 기능을 함. 지하보도는 수면, 취식, 개인위생, 사교 등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 공간일 뿐만 아니라 특히 공공부조 제도 진입에 필수적인 공적 노숙인 지원 서비스의 연계점이기도 함

- 지하보도를 비롯한 공공장소는 서울시 ‘노숙인 등 복지’ 정책사업의 출발점으로, 공적 노숙인 지원기관의 거리상 담 활동이 집중되는 주요 장소임. 특히 휴서기, 휴한기 등 계절 대책 추진 시 실내 공간인 지하보도의 중요성은 대단히 높아짐
- 그러나 지하보도 사유화는 정책 대상자들의 공간 사용을 제약함으로써 이 같은 정책 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즉 제도적 지원의 통로를 단절시키고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복지 사각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킴

3-2. 사유화가 야기하는 문제들 ③



국가인권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24-진정-0494600, 진정인)

1. 귀하의 무공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귀하 진정하신 진정사건(사건번호 : 24-진정-0494600)에 대하여 조사 및 심의한 결과,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조사대상아님) 및 제4호(1년이상경과)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 결정사항 :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피정인들을 특정하지 못하고, 피정인들은 사기업인 서울스퀘어 보안요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증언으로 보아 위원회 조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또한 해당 진정 내용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각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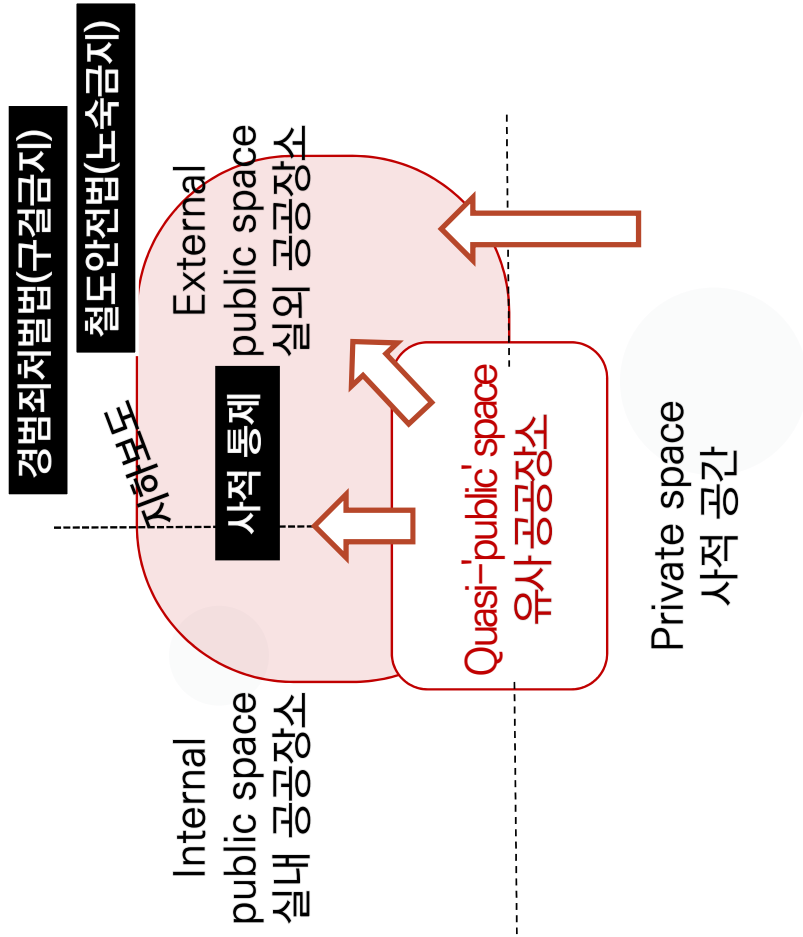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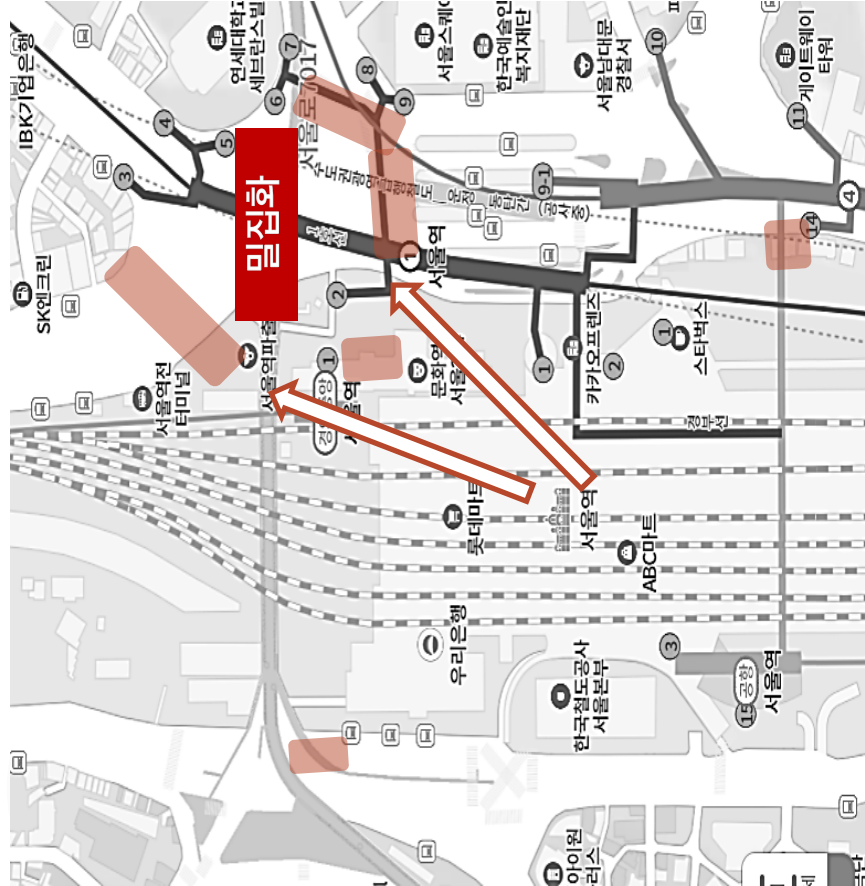
- 지하보도 내에서 가해지는 사적 제재는 제재 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되기 때문에 유무형의 위력을 수반하기 마련.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제어할 여지는 거의 없음

- 비교적 행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형식적으로나마 제도화된 형태의 인권 기준의 제약을 받는 공권력과는 달리, 사기업에 하도급 구조로 종속된 시설보안요원들에게 공적인 책임을 묻거나 특정 기준을 강제하기는 어려움. **필요 이상의 물리력이 동원될 위험성은 높은 반면 권리 침해에 대한 제도적 구제의 가능성은 대단히 낮음.** 이는 **부당한 사적 제재가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함**

3. 지하보도 사유화의 주요 문제

지하보도 사유화와 홈리스의 기본권

3-2. 사유화가 야기하는 문제들 ④



지하보도의 ‘공공적 이용’을 위한 조건

4

4-1 임시피난권의 인정

4-2 ‘모두의 지하보도’를 위한 요건

4-1. 임시피난권의 인정

홈리스 상태 homelessness

인간은 수면, 취식, 위생, 사교와 같은 필수적 · 일상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적 이고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공간은 적정 주거에 대한 접근성을 통해 보장 된다. 가장 직관적인 의미에서 ‘홈리스 상태’란 바로 이 같은 적정 주거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지난 2005년, UN 적정 주거에 관한 특별보고관 밀룬 코타리(Miloon Kothari)는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E/CN.4/2005/48)에서 “홈리스 상태는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가 존중 받지 못함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하고 심각한 징후”라고 말했다.

4. 지하보도의 공공적 이용을 위한 조건

지하보도 사유화와 홀리스의 기본권

4-1. 임시피난권의 인정

- 국제규범과 국내 법체계는 적정 주거권 보장의 책무와 홀리스 상태를 예방할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국제규약 및 국제인권규범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1조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정 수준의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UN 적정 주거권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 보고서 (A/HRC/40/61/ADD.1)

(한국) 정부에게 국제인권 의무, 지속가능개발목표 그리고 도시 의제에 기반을 두어 홀리스 근절을 목적으로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한국) 정부는 홀리스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고 근절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UN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4호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 주거권은 여타 다른 인권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있고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는 권리임
- 주거권을 단순히 비를 피할 지붕이 있으면 된다는 식의 좁거나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안전하고 편리하며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곳에서 살 권리로 받아들여야 함
- 적정한 주거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는 국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기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특히 취약한 집단과 적정하지 않은 주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문제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음

4-1. 임시피난권의 인정

국내 법체계

대한민국 헌법

-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34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
- [35조 3항] 국가는 (...)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거기본법 - 주거권의 구체적 권리성 인정

- [2조]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 노숙인복지법
- [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헌법재판소 1999. 4. 29. 94헌바37 결정

“태지는 일차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 서의 근본 요소”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5헌마222 결정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고, 특히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의무 또한 국가에게 있다.”

4-1. 임시피난권의 인정

“노숙자들이 지하보도에 있는 만드는 게 권리인가?”

당연히 그렇다.

흠리스 상태의 발생과 지속은 정부와 지자체가 국제법과 국내법이 규정한 주거권 보장의 책무를 방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사유재산(주택)에 대한 허가 없는 접근을 금지하는 현대 재산권 규정 하에서,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적정 주거의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향하는 곳이 지하 보도를 비롯한 공공장소이다. 따라서 행정부가 국제법과 헌법, 기본법에 적합한 의무를 실현하기 전까지 흠리스는 생존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임시 피난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지하보도의 공공적 이용을 위한 조건

지하보도 사유화와 홀리스의 기본권

4-1. 임시피난권의 인정

Q. 시설이 있는데 무슨 임시피난권?

UN 국권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A/HRC/56/61/Add.3)


- 적정 주거의 핵심 요소를 보장하지 않는 숙소를 거부하고 거리에 남는 것이 결코 위법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para. 13)
- 홀리스 상태에 처한 사람을 시설로 수용하는 법과 정책은 안전과 입지 또는 적정 주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홀리스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사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para. 19)
- 노숙인복지시설 입소지원나 쪽방·고시원 입주비 한시 지원(임시주거지원) 등의 정책사업이 하나의 선택지일수는 있으나, 이곳들 역시 인간다운 주거생활이 가능한 거처는 아니며 모든 홀리스가 택할 수 있는 옵션인 것도 아님. 오히려 또다른 비적정 거처를 대안으로 강조하는 것은 거리에 남을 수밖에 사람들을 낙인 찍고 공공장소에서 도시빈곤층을 제거하는 조치들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함

한겨레 구독 PICK ①

퇴소 뒤엔 또 강제수용...감혀버린 23년, 비극은 반복됐다

입력 2024.09.09. 오후 7:16 수정 2024.09.09. 오후 7:30 (기사원문) 고희태 기자

14 9 0 0 0 0




9월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성인 부랑민수용시설 4곳에 대한 인권침해 진실규명 기자회견 담화가 열려 사건 피해자 이영철(가명)씨가 증언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4. 지하보도의 공공적 이용을 위한 조건

지하보도 사유화와 홈리스의 기본권

4-1. 임시피난권의 인정 해외 사례

- 공공장소의 평등한 이용과 공공장소 내 홈리스의 권리를 강조하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공공장소 내 거리홈리스에 관한 프로토콜'(좌)과 19개 EU 도시들이 채택한 홈리스 권리장전(우)
-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프로토콜은 홈리스의 공공장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권리들로 가능하고 있음. 또한 주의회차원에서 프로토콜의 실질화를 위한 조사 보고를 시행 중
- 비록 법과 조례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장소 접근권과 관련한 공론의 여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



Protocol for Homeless People in Public Places

Plain English Guide

The Protocol for Homeless People in Public Places helps workers and police officers engage and support people who are experiencing homelessness.

What should the worker/police officer do?

- If the worker/police officer approaches you in these situations, they must:
- be understanding
 - respect you and your culture
 - get you an interpreter if you need or ask for one (including Auslan)
 - get a culturally appropriate support worker for you (where possible) if you would like one
 - help you to feel safe
 - help you to understand any information they give you.

How can a worker/police officer help you?

- The worker/police officer can help you if you want help. The worker/police officer may give you:
- advice and information
 - help to contact local services
 - a phone number or place you can go to get more help.

Unless you are at risk, the worker/police officer cannot share your information without your permission.

Feedback and complaints

If the worker/police officer does not follow the Protocol or you are not happy with the worker/police officer's behaviour, you can make a complaint or provide feedback.

You can do this by contacting the agency or service where the worker/police officer works.

For more information

Visit dejnsw.info/engagewell
Email homelessness.strategy@dofj.nsw.gov.au

Protocol for Homeless People in Public Places: Plain English Guide



The Homeless Bill of Rights

I. The right to housing

The most important right a homeless person has is the right to housing. Services that support access to appropriate accommodation must be accessible to all homeless people.

II. Access to decent emergency accommodation

Where housing cannot be immediately provided, the right to access decent emergency accommodation must be maintained for all homeless people.

III. The right to use public space and to move freely within it

People who are homeless should be granted the right to use public space, and to move freely within it, with no greater restrictions than apply to others.

IV. The right to equal treatment

The Council is committed to ensuring that our staff and services uphold the right to equal treatment for all, without discriminating against those who do not have a home.

V. The right to a postal address

People who are homeless often experience restricted access to the labour market and public services because they cannot provide a postal address. People who are homeless have the right to an effective postal address.

VI. The right to basic sanitary facilities

The right to access basic sanitary facilities must be provided for. This includes running water (drinking fountains), showers, and toilets of a standard that allows a dignified level of hygiene to be maintained.

VII. The right to emergency services

Homeless people should have the right to emergency services – social services, health services, the police and the fire service – on equal terms with any other resident of the Council area.

VIII. The right to vote

People experiencing homelessness should be included on the electoral register and given the necessary documents to prove their identity when voting in elections, without being discriminated against because of their housing situation.

IX. The right to data protection

Homeless people have the same right to data protection as other citizens and the same right to exercise control over their personal records (health, housing, any criminal record) and information.

X. The right to priva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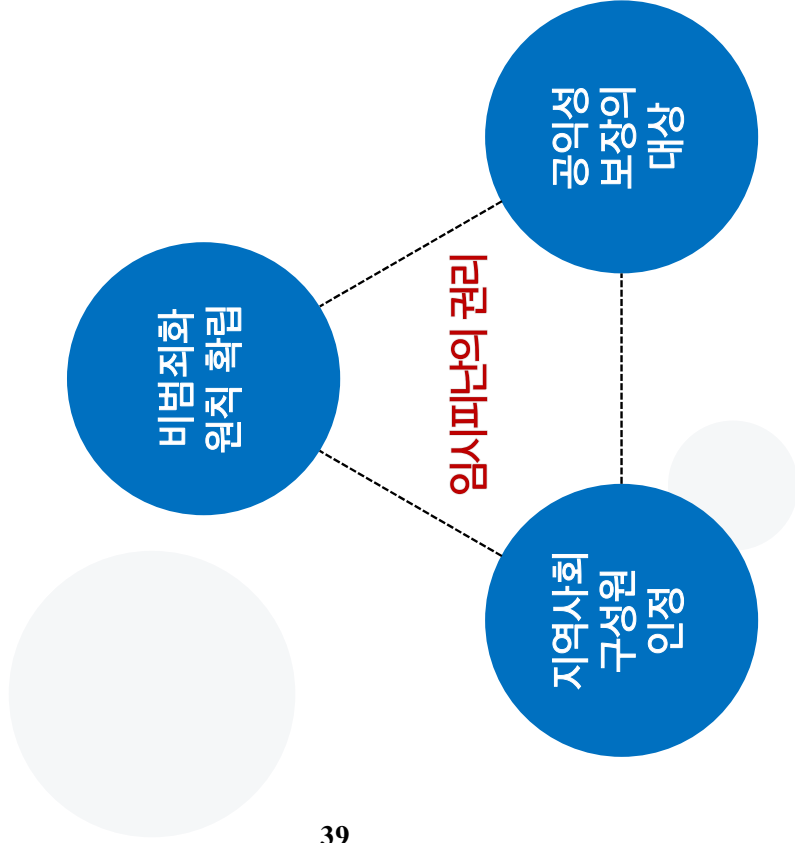
A homeless person's right to privacy must be respected and protected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in all types of accommodation, including any communal accommodation, structure or informal accommodation they may occupy.

XI. The right to carry out practices necessary to survival within the law

Homeless people should have the right to carry out practices necessary to survival within the law. Survival practices such as begging, or foraging for discarded food should not be criminalized, banned, or arbitrarily confined to specific areas.



4-2. 모두의 지하보도를 위한 요건



- 만약 우리가 모든 이해관계를 벗어난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다면, 지하보도가 시민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합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 지하보도 내 흠리스의 임시피난권을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같은 합의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긴 하지만 쟁점은 여전히 남는다.
- 이를 테면 시설유지 책임자 또는 보행자와의 갈등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 '안전하게 보행할 권리'와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등은 지하보도의 공공적 이용을 말할 때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 본 발제에는 이런 난점과 관련해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자 함

4. 지하보도의 공공적 이용을 위한 조건

지하보도 사유화와 흠리스의 기본권

4-2. 모두의 지하보도를 위한 요건

비범죄화 원칙 확립

- 지하보도 사유화에 따른 사적 제재 또는 상업시설 폭증은 인근 공공장소까지 영향을 미침
- 사적 제재에 대한 행정부의 부적절하거나 소극적인 대처는 오히려 '밀집화'를 초래하여 지하보도 공간을 둘러싼 갈등을 여지를 남길 뿐만 아니라 공적 통제마저 강화함
- 1) 사적 제재에 대한 엄격한 대처와 더불어, 2) 국제규범과 임시피난권(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긴급피난) 관점에 입각해 징벌적 치안행정 조정해야 함

지역사회 구성원 인정

- 지하보도 공간을 둘러싼 여러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영향을 끼치지 않음
- 지하보도 개방 시간 조정, 공간 폐쇄, 관리 주체 이전, 건조환경 변화, 상업시설 입점 등 지하보도 공간 (재)조정 관련 도시행정 차원의 모든 절차들에 있어 도시민군중에 미칠 영향이 검토되어야 하며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취해져야 함
- *지역사회 주민의 정체성을 행정상 주소지가 아닌 '일상'을 중심으로 정한 서울시 조례 존재

공익성 보장의 대상

- 지하보도 내 흠리스를 공익성 보장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동료 시민들과 공간을 공유하고 공존을 모색할 방안을 찾아야 함
- 가장 시급한 것은 흠리스의 접근가 사용이 용이한 공공시설물(공중화장실, 공설 캐비닛 등)의 설치임. 이는 흠리스의 필요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지하보도 내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감축시킬 수 있음. 관리 운영과 관련한 고민이 필요할 따름임

참고 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11), 『노숙인 인권 실태조사: 서울역의 이간 노숙행위 금지 조치가 노숙인 인권에 미치는 영향』
- 김원우 외(2012), 「노숙인의 서울역 심야이용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 탐색, 홈리스행동 보존자료」
- 김지혜 (2012), 「구결행위금지조항의 위헌성: 미국 주요판례를 통한 비교법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53(3)」
- 서울특별시 (2018), 『지하연결통로 가이드라인』
- 서울특별시 (2013), 『서울시 거리노숙인이웃리치 매뉴얼』
- 이은기 (2016), 「주거법원의 제정과 주거권, 그 함의」 공법연구, 44(4).
- 손지혜 (2015), 「공공지하보도의 한시적 활용방안 도출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시 유희 공공지하보도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행정안전부 (2024), 『2024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
-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2017), 『2017 홈리스 인권(형벌화) 실태조사』
- 홈리스행동 (2024), 『2024 홈리스 인권(형벌화) 실태조사』
- Amin, A., & Graham, S. (1997), "The ordinary cit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2(4), 411-429.
- Amster, R., (2004). *Street, people and the contested realms of public space*, LFB Scholarly Publishing.
- Blomley, N., (2010). *Rights of passage: Sidewalks and the regulation of public flow*, Routledge.

- Browarczyk, L., (2013). "Criminalisation of homelessness in Poland," in Jones, S., ed., *Mean Streets. A report on the criminalisation of homeless in Europe*, Fondation Abbé Pierre, Feantisa y Housing Right Watch.
- Carmona, M., Heath T., Oc, T. & Tiesdell, S. (2003). *Public spaces – Urban spaces*, Oxford: Architectural Press
- Sepúlveda, C.,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eme Poverty and Human Rights,"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66/265, August 4, 2011.
- De Schutter, O., (2024).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eme Poverty and Human Rights: Breaking the cycle: Ending the criminalization of homelessness and poverty,"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A/HRC/52/34, June 24, 2024.
- Doherty, J., Busch-Geertsema, V., Karpuskien, V., Korhonen, J., O'Sullivan, E., Sahlin, I., Tosi, A., Wygnańska, J., (2007). *The Changing Role of the State: Homelessness and exclusion: regulating public space*, FEANTSA
- Glyman, A., & Rankin, S., (2016), *Blurred lines: Homelessness & the increasing privatization of public space*, Seattle University School of Law, Homeless Rights Advocacy Project.
- Kothari, M. (2005),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adequate housing as a component of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N.4/2005/48, March 3, 2005.
- Levy, J. J., (2021), "Revanchism via pedestrianism: Street-level bureaucracy in the production of uneven policing landscapes," *Antipode*, 53(3).
- Meert, H., Stuyck, K., Cabrera, P.J., Dyb, E., Filipovic, M., Györi, P., Hradecký, I., Loison, M., Mass, R., (2006), *The changing profiles of homeless people: Conflict, rooflessness and the use of public space*, FEANTSA
- Mitchell, D., & Staeheli, L. A., (2006). "Clean and safe? Property redevelopment, public space, and homelessness in downtown San Diego," in Low, S., & Smith, N., eds., *In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Routledge.
- Wacquant, L., (2009), *Punishing the poor: The neoliberal government of social insecurity*. Duke university Press.

토론

토론 1. 로즈마리 거리홈리스 당사자

토론 2.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토론 3.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토론 4. 재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토론 5. 김태우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 도로시설과 지하시설팀 팀장

토론 1

거리홈리스에게 있어 지하보도가 가지는 의미

로즈마리, 거리홈리스 당사자

1. 민간 기업 서울스퀘어의 지하보도 내 거리홈리스 퇴거 조치

어디를 가든 맨날 '이동하라'고만 하니, 처음에는 서울역 앞 지하보도가 누구의 땅인지 몰랐습니다. 아마 서울스퀘어도 처음에는 자기네 땅인가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알려졌다고, 그곳은 원래부터 서울시 중구청이 관리해야 하는 구역입니다. 서울스퀘어 보안요원도 위에서 지시하니까 나와 있었겠지만, 서울역 앞 지하보도는 서울스퀘어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보안요원에게 폭언을 들은 거리홈리스 당사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파서 눕지 못하고 앉아서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의자에 앉아 쉬기도 하고, 아예 앉아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 사람 나름의 자존심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하보도에서 안 나가겠다고 하니, 보안요원이 의자를 들어서 밖으로 옮겨주겠다고 했답니다. 아마도 차림새가 괜찮은 여행객이었다면 앉아서 좀 쉬다 가도 괜찮았을 텐데, 한 눈에 봐도 행색이 초라하니 차별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네들 영업 장소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지하보도에서 없어지는 게 좋겠다고 위에서 회의를 했겠죠.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서울역 앞 지하보도는 서울스퀘어의 구역이 아닙니다. 관계없는 민간 기업에서 공공장소에까지 와서,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나가라 마라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하보도들도 마찬가지죠.

2. 거리홈리스의 입장에서 살펴본 지하보도의 의미

영하 10도, 18도가 되어도 한테에서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광장에서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라든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 노숙 상황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든 숨습니다. 때로는 우산으로 몸을 가리거나, 박스로 안 보이게 덮기도 하죠.

광장은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공간이지만, 지하도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바깥에서 자면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기도 하고, 시비를 걸기도

하니까 무섭다고들 합니다. 그래도 지하보도에는 철도 관계자들도 지나다니고, 드물어도 구청 사람들이 다니기도 하고, 경찰들이 지나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보안이 된다는 느낌도 받고, 때로는 조금 든든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너무 오픈되어 있는 광장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밖이 너무 더울 때는 더위를 피해 지하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비가 올 때도 그렇습니다. 지하보도는 그늘이 되어 주기도 하고, 바람도 막아줄 수 있고, 그래서 아늑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시락과 옷을 받으러 지하보도에 가기도 합니다. 물품을 주는 사람들도 어느 역 2번 출구 지하로 오라고 하니, 그곳에 미리 가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 지하도에 마침 머무르는 동료가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생활 정보를 얻기도 하죠. 서로 배고플 때 음식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곳에 그 사람이 있는 것을 아니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지하도에서는 주말마다 의사, 약사, 한의사가 와서 약도 주고, 침도 놔주고 합니다. 병원에 가기 어려우니, 지하도에 진료소가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그렇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남대문의 한 지하도에는 짐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도 합니다. 여닫이 문이 있어서 잠글 수 있다고도 하더군요. 거리홈리스는 짐이 많습니다. 바닥의 한기를 피하기 위해 돛자리도 깔아야 하고, 날씨도 날씨지만 내 몸을 가리기 위해 우산도 가지고 다녀야 하고, 갈아입을 옷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 배고플 때 먹을 음식도, 세면도구도 있어야 하고요. 그 많은 짐을 손으로 들거나 끌고 다니기 힘들어서, 겨울옷을 여름에도 내내 끼입고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어디에다 둘 수만 있다면, 몸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짐을 두고 다니는 또 다른 이유는,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노숙인이라고 생각해 어디에서든 나가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짐을 어디에든 두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대부분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른 곳에 짐을 두고, 저는 그저 짐 없이 온 손님인 것처럼 앉아 있기만 할 뿐입니다.

여러 경험을 종합하자면, 거리홈리스에게 지하보도는 한마디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거쳐갈 수밖에 없는 공간인 것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 돈을 써야 하는 세상에서, 임시방편으로든, 다소 장기간이든 머무를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3. 지하보도를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

지하보도를 비롯한 공공장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집이 없는, 집에서 잘 수가 없는, 많은 짐을 끌고 다니며 쉴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잠시라도 머물며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되어야 합니다.

물론 가장 우선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집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의 보호막이 되어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산 밑에 위치한 한 고시원처럼, 리모델링을 한다고 사람들을 거리로 내모는 곳도 있고, 너무 더워서,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 없는 집도 있습니다. 집도 집다운 집이 필요한 건데, 공공장소에서조차 가난한 사람을 가려내는 사회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집을 모두가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혹 지하보도는 걸어 다니는 곳이지 눕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낮에 누워 있는 게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노숙을 오래 한 사람도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앞서 말했듯, 지나가는 사람이 말을 걸고 툭툭 치기도 합니다. 물 청소를 한다고 이동하라고 할 때도 있고, 화재 위험이 있다고 나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활동하는 아침 시간에, 낮 시간에 졸리기 마련입니다. 자는 모습을 안 보이고 싶어도, 졸리기 때문에 구석에 가서 조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긴장한 상태로 자기 때문에 잠을 설치고, 그래서 낮에 지하철에서도 자고, 공원 구석에 가서 자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나다니는 사람은 그걸 보고 민원을 넣겠다고만 하겠지만요.

스스로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든, 음식과 옷을 받기 위해서든, 집이 없어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해서든, 때로는 물건을 임시방편으로 두기 위해서든, 잠시 쪽잠을 잘 곳이 필요해서든, 공공장소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공간이 되면 안 되겠지만, 나도 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4. 나가며

지하보도를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동하라’는 말입니다. 간신히 잠을 자고 있는데 옆에 와서 그렇게 소리치면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나빠지지 않으려고 내가 미리 알아서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 말 한 마디가 머리에 박혀서, 전혀 다른 상황에서도 ‘이동하라’는 말만 들으면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를

지경입니다.

‘이동하라’는 말을 듣고도 이동하지 않으면, 아예 지하도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더군요. 2021년 11월, 1호선 시청역 지하도 출입구마다 문이 생겼습니다. 그 지하도에서 열댓 명의 거리홍리스가 추위를 피해 잠을 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생겼고, 밤 시간 지하도 문을 닫기 시작하자, 지하도에서 자던 사람들은 거리로 흩어졌습니다. 서울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하도 문을 닫아야 한다면, 사전 고지라도 충분히 해서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알려줬어야 합니다. 일대일로 상담이라도 했어야 합니다. 밖에서 얼어죽는 노숙인도 있습니다. 11월 그 추운 날에 그렇게 나가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할 짓이 아닙니다.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벼는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모와 행색을 많이 본다는 말이겠지요. 실제로 불리한 게 있습니다. 외모가 누추하고, 행색이 초라하여 차별받습니다. 초라한 행색을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내쫓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저는 차별이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리홍리스 동료들에게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서울역 앞 지하보도가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했을 땐 나도 꿈쩍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곳이 공공장소임을 알아내고 난 뒤에는 다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게 될 때, 너무 주눅 들지 마십시오. 거리홍리스도 그곳에서 지낼 수 있고,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럴 권리가 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지하교통시설의 공공성 문제: 소유권 편향에서 벗어나야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교통시설의 '실질적' 접근성 문제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이후, 인프라로 약칭하여 표기한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접근성이다. 시민이 도시의 인프라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인프라의 효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외의 주요한 도시계획에서는 접근성 평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¹⁾. 문제는 여타의 교통시설도 그렇지만 교통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요소조차도 정부가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민간의 자기노력에 기대어 발전해왔다. 이와 같은 특징은 한국의 공적 공간이 사적 이익을 위해 종속되는 일반적인 현상을 야기한다. 가깝게는 건축계획에 의해 당연히 설정된 건축선에 의해 만들어진 인도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나 대형 마트가 공공용지에 임의로 가판을 세워서 영업을 하는 행위, 그리고 주요 영업시설들이 당연하게도 인도를 상시적으로 점유하여 판매행위를 하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현상들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서울시나 일선구청들은 거리의 노점상을 철거하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한다. 하지만 역으로 앞서 사례를 든 내용들은 잘 해결되지 않는다²⁾. 그 배경에는 한국 도시계획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로서 '사적 소유'에 대한 절대적 유보가 있다. 도시계획 상의 조정은 당연히 일방적인 침해가 아니라 계획상의 인센티브나 혹은 건축행위에 따른 부정적인 사회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후 이용에 있어서는 다시 원래의 소유 구조에 취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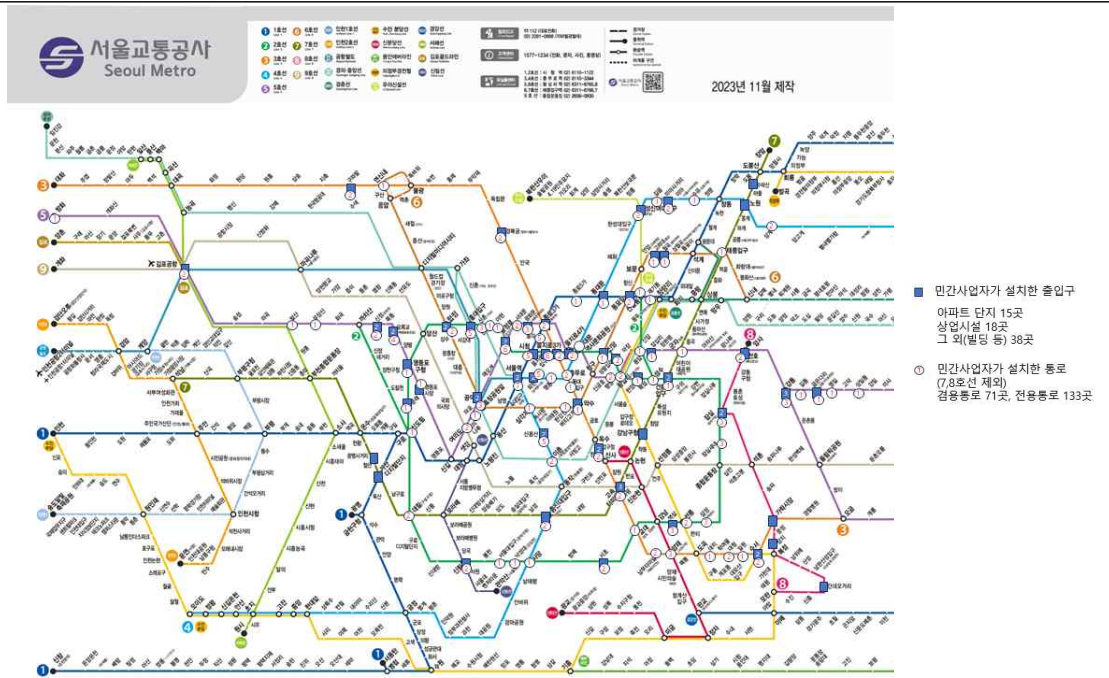
특히 지하로 연결되는 교통시설인 지하철의 경우에는 지상부로는 도로나 건물 등에 의해 접근이 어려워도 지하로는 직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 연결 인프라가 중요하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하철을 건설할 때 당연하게도 주요한 도로를 중심으로 출입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한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나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출입구나 지하통로가 개설되는 일들이 발생한다. 해당 사유는 초기 계획에서 검토한 출구나 통로의 계획 상 타당성을 넘어서 해당 민간 행위자-상업시설이나 집합시설이 대부분이다-의 특정한 이익을 위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규모 상업시설에 직결되는 출구는 공공교통시설인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들을 특정한 상업공간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당연히 민간사업자의 영리행위에 도움이 된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과 직결된 출구는 입주민의 편의성을 위한

1) 이미 유럽권에서는 1990년대부터 사회경제적 요소를 고려한 접근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교통부, 교육부, 노동부, 보건부 등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에 기반하여 접근성 기반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한국교통연구원(2015), 대한민국의 교통접근성 평가 연구) 하지만 한국의 교통계획은 자가용의 경우에는 거주지 중심의 접근법을 사용하나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여전히 정류장 중심의 접근법을 주로 사용하는 한계를 보인다.

2) 고양시의 한 지하철역에 가까운 상가건물과 지역 주민들간의 분쟁은 10년이 넘도록 반복되고 있다.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축선이 정리된 지역에서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는 생선가게가 10년도 넘게 토지구획선 기준으로 가판행위를 한다.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청은 고사하고 경찰 역시 전혀 개입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건물주의 행위를 보호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것이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해당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높여서 사적 이익으로 전환된다. 이런 경향성은 다음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하게 출입구나 통로가 만들어진 곳이 대부분 서울 도심부에 있거나 아니면 최근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된 곳에 위치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서울시 주요 지하철역의 출입구 및 지하통로 개수 현황(~2023년)]



*토론자 자체 제작으로 부분적 오류가 있을 수 있음

이런 사실은 지하철이나 철도와 연결된 지하통로와 출입구가 법제도적 규칙과 별개로 실제 이용 상의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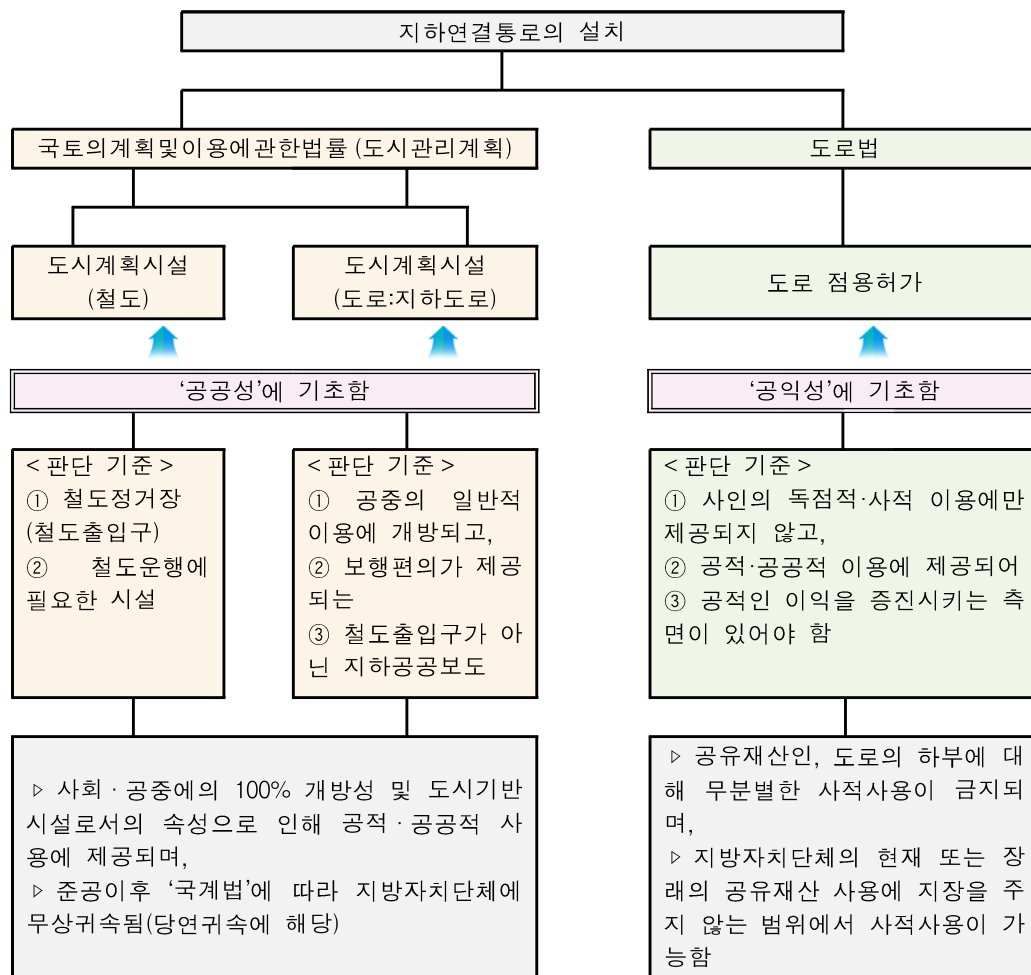
적용되지 않는 규정, 방치되는 공공성

서울시는 2018년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지하연결통로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함에 반해, 그간 연결통로 설치기준 등의 불명확으로 인해 일관된 행정처리가 부재하였기에 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행정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제고코자 함”이라는 배경을 밝혔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하연결통로를 둘러싼 갈등이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말하는 지하연결통로는 지하공공시설(지하철역, 지하도상가) 등과 인접 사유건물 대지(공개 공지) 내 또는 사유건물 내를 연결하는 통로로 정의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모호했던 지하통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지하통로의 유형을 제도적 근거를 토대로 구분하여 명확성을 확보했고 각각의 관리 및 이용 원칙을 공공성과 공익성으로 구분하여 구분하였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철도시설과 지하도로는 명확하게 공공성을 근거로 관리하고 도로법에 의한 시설은 공익성에 근거하여

관리한다. 이 둘은 구분은 지하통로가 연결하는 시설물의 성격에 달려 있는데, 지하철이나 철도와 같은 시설물에 연결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것이고 민간시설물 간의 연결을 도로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설치되는 것을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유형의 시설 모두 공중에 개방되어야 하고 도로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익이 우선하지 않도록 명시한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도로시설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사적 사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을 내야 한다.

[가이드라인 상 지하시설물에 대한 판단 기준]



*서울시(2018), 가이드라인 7쪽.

공공성과 공익성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해당 공간이 어느 정도로 개방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지만, 개방성이 한정적으로 제약이 되는 수준에서도 구분할 수 있다. 이를테면 공공성이 중요한 시설의 경우에는 완전히 사적사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공익성이 중요한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유지하는데 점용료와 사용료를 내야 한다. 만약 해당 시설에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시설은 사실상 해당 부담금을 징수해야 하는 지방정부가 반대급부로서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공공재산을 일방적으로 특정한 사적 행위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즉 대가를 받지 않고 지하통로를 사적으로 이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특혜의 제공인 셈이다.

[시설별 사용 및 관리 원칙]

설 치 방 식 (총 264개소)	내 용				
	구 분 원 칙	점용료	사용료	무상귀속	구분지상권
도시계획시설(철도) ⇒ 101개소, 38%	구 분 원 칙	×	×	○	○
도시계획시설(지하 도로) ⇒ 25개소, 10%	구 분 원 칙	○	○	○	○
점용허가 ⇒ 138개소, 52%	구 분 원 칙	○	○	○	○

실제로 주요한 지하통로의 경우 협약서를 통해서 관할 지방정부의 허가나 승인이 없이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개방성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 임의적인 통행 방해할 수 없도록 한다.

호선	역명	건물명	연결형태	관리주체	연결시기
1	서울역	세브란스빌딩	전용통로	건물주	'93.06
1	서울역	대우빌딩, 보도	전용통로	건물주	'77.12
1	서울역	철도공사 서울역	전용통로	건물주	'03.11
1	서울역	서울민자역사	전용통로	건물주	'03.11
4	서울역	게이트 타워	겸용통로 (#11번출입구)	건물주	'90.09
4	서울역	서울시타워	겸용통로 (#10번출입구)	건물주	'01.02
호선	역명	건물명	연결형태	관리주체	연결시기
4	서울역	동자동 4구역	전용통로	건물주	'12.06

제7조 (시설물의 구분)
지하연결통로와 지하철1호선 서울역 경계지점은 지하철 도목구조물 외벽선으로 한다.

제8조 (시설물의 사용)
"을"은 연결통로를 지하철 영업시간 내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서 개방하여야 하며,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을 제한하거나 당초 점용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없다.

② "을"은 도로부지내 지하연결통로 시설물 등 설치공작물을 준공과 동시에 그 일체를 서울시(관할구청)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사유지내 연결통로 및 시설 출입구(지하1층~지상1층)에 대해서는 지하철 이용승려의 편의를 위하여 지하철 존속시까지 24시간 개방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물의 사용제한 금지)
① 지하 연결통로 및 시설출입구(공작물)가 설치된 "을"의 사유지 지하 및 지상 토지의 사용은 무상으로 한다.
② "을"은 도로부지 및 사유지내 연결통로 부분은 일반시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함서 개방하여야 하며, 본 시설물에 대하여 "갑" 또는 서울시(관할구청)의 사전 승인없이 사용을 제한하거나 협약체결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사용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기간과 적용 등은 지하철 존속시까지로 한다.

제11조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① "을"은 건축대지 경계선밖(공로구간:도로부지) 및 사유지내의 연결통로를 "갑" 또는 서울시(관할구청)의 사전 승인없이 본 협약체결시 약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의 시설물로 변경 사용할 수 없고, 또한 도로 및 지하통로에도 "갑" 또는 서울시(관할구청)의 사전 승인없이 검교 등 이를 추구를 위한 제반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대지 경계선내(사유지구간)에서도 위의 시설로 인하여 불로사용에 당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불신을 부르는 불공정성

이와 같은 사정을 두고 토론회의 주제인 지하통로에서의 노숙인 문제를 보자. 이 문제는 지하통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설을 설치한 민간 행위자와 공공 행위자 간의 관계(①)와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과 공공 행위자 간의 관계(②)가 존재한다. ①의 관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이나 도로법 상의 규정에 의한 관계로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규칙의 문제가 되고 ②의 관계는 공공 행위자가 별도의 사회정책에 의해 채택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점용 문제가 된다. 이 둘의 관계는 전혀 교차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①의 권리관계는 어디에도 ②의 권리관계와 겹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①의 관계에서 파생한 민간 행위자의 권리가 ②의 관계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특정한 행위자의 권리를 제약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공법과 공적 권리 체계가 지나치게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권리체계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요한 선진국 어디에서도 사적 소유의 권리가 공공공간 내에서 일방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는 미국에서 주차 상업시설 앞의 벤치를 노숙인이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나서서 개선을 요구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미국 보이즈시가 공원에서 잠을 잔 노숙인을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이유는 노숙에 이르는 상황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그랜츠 배스 시를 대상으로 하는 재판에선 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도 했다.

“수정헌법 8조에 따라 도시는 그 도시 안에서 잘 데를 구하지 못해 간신히 몸만 덮고 야외에서 잠을 자거나 차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을 노숙 금지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거나 강제로 쫓아낼 수 없다.”³⁾

한국 정부나 서울시와 같은 지방정부가 노숙인에 대해 온정적인 정책을 펴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공공공간을 지나치게 관리 위주로 접근하는 태도는 최근 지방정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반면 교통광장 등에서 벌어지는 상업행위나 종교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온정적이다. 그리고 지하철연결통로에 대한 관리를 임의로 민간 상업건물의 관리자가 하도록 하고 이들에겐 법에서 보장되지 않는 ‘시민에 대한 통제’까지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용산역 광장에 대해서는 아예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우선적 사용권을 보장했다는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당연히 행정 행위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들게 한다. 결국 행정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이어서 장래에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방치된 지하공간의 문제

최근 신설되는 지하철 등 교통시설들은 대개 상당히 깊은 플랫폼을 가진다. 대부분 토지보상비를 아끼고 기존의 지하철 등의 지하시설을 피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러다 보니 사용되지 않는 지하공간이 늘어난다. 해당 공간을 유지 운영하기 위한 관리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공간 사용의 효율성은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지하철통로의 문제는 점차 늘어나는 서울시의 지하공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일 수 있다. 과거와 같이 서울시가 일일이 관리할 수 없다면 공간의 이용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막대한 공공비용을 감수하면서 유지하는 공공시설물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이 될 것이다. [끝]

3) 심영구, “길에서 자면 불법” ... 그들을 더는 버랑 끝으로 내몰지 말라, 2024. 5. 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29005&plink=COPYPASTE&cooper=SBSNEWSE ND

토론 3

빈민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 사적 폭력에 의한 홈리스의 지하보도 접근권 박탈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1. 공공 공간의 축소와 추방

서울역 지하보도에서 사람이 쫓겨 나고 있다. 그것도 회사의 경비에 의해. 그런데도 경찰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인도나 보도, 지하보도는 공원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이다. 그곳에서 쉬든 걷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다. 폭력으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누구나 공적 장소에서 추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공공공간은 누구에게나 접근가능해야 하고 차별 없는 공간이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확산 이후 공공 장소가 사유화되고 줄어드는 현실에서 공공공간에서의 접근성 보장은 더욱 중요하다.

단지 행색이 초라한 홈리스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공공 장소에 있지 못하도록 할 권한은 서울스퀘어 보안요원에게 없다. 공공의 장소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현존하는 공공 공간조차 가난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거나 추방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발제문에서도 드러났듯이, 서울역사 근처만이 아니라 종로타워 등에서도 상업시설 확충을 명목으로 공공이용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공 공간은 매우 중요하다. 개인이 소유하는 공간이 없으니 많은 일들을 공유공간, 공공공간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집이 없으니 공공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공동화장실에서 세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들을 내쫓는다면 그들은 생존조차 할 수 없다.

그래서 유엔 극빈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보고서 「A/HRC/56/61/Add.3 “Breaking the cycle: Ending the criminalization of homelessness and poverty”」(‘악순환 깨기: 홈리스 상태와 빈곤의 범죄화 종식하기’)에서 ‘공공장소에서의 퇴거’를 비롯한 홈리스에 대한 범죄화 조치는 그 자체로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추가적인 인권의 침해를 발생시키고,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영속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0호(2009)에서도 명시되어 있다. 개인 및 개인의 집합은 사회 내 특정 경제, 사회 집단 또는 계층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서로 다르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빈곤 상태로 생활하거나 홈리스인 사람은 그의 사회, 경제적 위치로 인해 광범위한 차별, 낙인찍기 및 부정적 선입관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차별과 선입견 등으로 인해 그는 다른 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불균등한 접근성, 거절 등)고 우려한다. 또한 그들은 공공장소 이용에 있어서도 불균등한 접근성과 거절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차별금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국제인권기준은 홈리스의 공공장소의 자유로운 이용의 중요성, 차별금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공 공간에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출현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인권침해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출현 자체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유엔 극빈과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에서도 홈리스와 같은 도시빈민들은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른 소수자로 바라보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를 은폐하고 배제할수록 소수자 차별과 빈곤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국가개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축소시킨다.

2. 사설 경비(사적 권력)에 의한 추방의 문제점

이러한 홈리스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추방이라는 물리적 조치가 국가기관이 아니라 사설 경비에 의해 추방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일이다. 사설경비원에게 노숙인들이 추방되고 폭력을 당하는 현실을 정부와 국가는 뒷짐을 지고 방치하고 있다. 사태는 그대로 둔 채, 문서로 그러지 말라고 권고하는 정도가 최선인 현실을 참담하다.

이는 우리 사회에 국가에 대한 불신을 높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사적 권력기관에 위협받고 침해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힘에 의한 논리, 돈에 의한 논리를 강화시킨다. 더 문제는 이러한 사설경비업체들의 경우 공권력과 달리 물리력 행사의 절차나 최소침해원칙 같은 인권기준들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적어도 공권력의 경우 물리력을 행사하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홈리스나 위법한 행위자라 할 지라도 인권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준과 절차가 있다. 그리고 인권교육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설경비들은 이러한 인권교육도 없고, 물리력 행사의 조건과 방식, 절차 등이 없으니 인권침해의 정도와 차별 혐오 발언이 심각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최근 이렇게 사설경비들의 권한을 용인해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 경호업체¹⁾가 인천공항에서 배우 경호를 하면서 권한도 없이 개인정보와 출입 통제를 하여 이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한 경우도 있다.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호업체나 경비업체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절실한 때다.

경비업법에 따르더라도 경비들이 공적 장소인 지하보도에 홈리스들이 드나드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 경비들의 업무가 스퀘어 건물을 경호하는 것이 업무라면 그것만 하면 된다. 그런데 그 업무²⁾를 벗어나

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배우 변우석씨 ‘과잉경호’ 논란을 일으킨 사설 경호업체를 고소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천공항 경비대의 관련 조치들이 적절했나를 조사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 소속 경비대는 25일 변씨 경호를 맡았던 사설 업체에 대해 공항운영 방해죄와 강요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인천공항경찰단에 접수했다. 이는 경호원들이 승객이 이용하는 공항 게이트를 임의적으로 통제하고 승객에게 항공권 확인을 받는 등의 공항 운영에 피해를 입힌데 따른 것이다.

2) 경비업법 2조에 경비들의 업무가 정의되어 있다. 서울스퀘어의 경비들의 업무는 가에 해당할 것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5. 31., 2013. 6. 7., 2024. 1. 30.>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신변보호

공공장소에서 홈리스들의 시민권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경비들은 소위 집회 시위와 같은 집단민원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국제인권기구의 비난을 받은 바 있는데, 최근에는 일상적인 시기에도 권한을 남용하고 있어 문제다. 인권침해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2011년과 2014년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시설경비업체의 행위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³⁾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설경비업체들은 국제인권기준을 현재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자의 의무(7조)나 경비원의 의무(15조)⁴⁾에도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관리 감독되지 않기에 무용지물이다.

3. 지하보도의 공적 이용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방안

공공장소를 차별 없이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나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홈리스 등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인권단체가 서울스퀘어의 차별행위(지하보도 이용방해행위)에 대해 진정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각하했다. 당시 인권단체들은 “2023년 6월 9일, 피진정인 서울스퀘어 보안 요원이 ‘서울역앞 지하보도’에서 거리 홈리스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은, 서울시 중구청의 소유·관리 구역인 ‘서울역앞 지하보도’에 대한 관리·통제 권한이 없는 피진정인의 월권 행위이자, ‘서울역앞 지하보도’의 이용자 중 거리 홈리스를 배제·구별하여 대우한 차별 행위이며, 거리 홈리스의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진정했다.

인권위법상 서울스퀘어 측이 사적기관이므로 차별로 진정할 수 있기에 차별 진정을 하였다. 인권위법 2조와 19조에 명시된 차별행위는 인권위의 업무다.⁵⁾ 지하보도라는 공공장소를 이용 못하게 한 것은

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3) 2013년 5/29부터 6/7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씨가 지난탄압 받은 인권옹호자, 관련 정부부처, 기업, 시민사회 등을 만나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를 조사했다. 인권옹호자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특별보고관의 조사 결과는 오늘 기자회견에 이어 2014년 3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실태조사의 결과와 권고가 담긴 보고서로 발표했다. 시설경비용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회사에 의해 고용된 시설경비용역의 주민들을 포함한 평화적 시위자들에 대한 활동이 법의 지배와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①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인권위법 2조(정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기 때문이다. 혐리스라고 공적 장소를 이용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법리 검토조차 안 했는지 각하했다.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또한 1년이 경과했다며 인권위법 32조 1항 1호와 4호에 의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법 상 차별의 경우 민간기업도 조사대상인데, 영터리 법리 해석으로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또한 1년이 경과했는지라도 인권위가 조사하기로 결정하면 조사할 수 있음에도 1년이 경과했다고 각하했다. 즉 인권위가 혐리스 차별 해소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책임은 강화해야 한다. 위 보고서의 33항에는 평등한 대우로 네 가지 개별적인 규범을 제시한다. "첫째, 국가는 **규제 및 정책 체제가** 빈곤층을 차별하지 않도록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국가는 **국가기관(state agent)에서 그러한 차별을 저지르지 않도록** 법의 평등한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이 기준은 공공기관이 그들이 내리는 불평등과 빈곤에 관한 결정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의무를 포함해야 한다. 예컨대, 영국의 사례에서 '더 공정한 스코틀랜드 의무(Fairer Scotland Duty)'는 스코틀랜드의 공공기관이 전략적 결정을 내릴 때 사회경제적 불이익으로 인한 결과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고려할(pay due regard)' 법적 책임을 부여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021년 평등촉진 및 부당한 차별방지 개정법안 제24조를 강화해 국가와 공공기관에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증진하고 이를" 의무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국가는 빈곤층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고용주 및 사립 교육 기관 등의 민간 행위자**를 규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구조적 또는 제도적인 차별 사례에 대항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차별에 대해 평등하고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리하면, 규제 및 정책의 수립, 국가기관 행위자의 차별금지, 고용주 등 민간행위자에 대한 규제, 차별 사례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기준으로 법제도를 개선한 나라가 있다. 2016년 프랑스에서 빈곤한 가족이 냄새 때문에 관광객이 방해된다는 판단으로 박물관에서 경비원에 의한 추방되는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에서는 논란이 있었고, '사회적 불안정성' 개념을 반차별 체계에 도입하고 빈곤을 이유로 한 차별을 범죄로 규정했다. 빈곤층에게 찍히는 낙인이 높은 수준의 권리 미취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었다.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규제

6) 인권위법 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제라도 정부가 할 일은 공공자소에서의 흡리스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관련 법령에 포함시키고, 국가기관의 인권교육에도 흡리스 및 빈민 인권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사설경비업체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을 포함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나 행안부에서는 정기적으로 경비업체의 인권침해행위를 관리 감독하고, 경비업체에서는 경비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권위 등에서는 이미 발생한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구제책을 제시해야 한다.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23. 5.22.)>가 있는 만큼 그 조례에 흡리스 등 빈민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을 넣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제4조(접근권)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조례가 편의증진법에 의한 조례인 만큼 현재는 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만 있는데, 설치기준 및 공공이용에 관한 조례로 확대하여 차별금지 조항을 넣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현재의 서울시의회 구성이 인권에 관심이 없는 의원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실현가능성이 많지는 않다.

그 외에 입법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보도 이용의 차별금지를 우선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흡리스들이 공적 장소에서 누워있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조차 막아왔던 관행이 이렇게 사설경비들에게까지 확대된 것이라는 점에서 더 책임감을 느끼고 보도이용의 차별금지를 공표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출입통제가 빈민에 대한 차별이며, 흡리스 등 빈민의 시민권을 부정하는 행위임을 공표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경찰 등은 공식적으로 지하보도는 모두의 공간이므로 행색이 초라하거나 냄새가 난다고 누구도 출입을 통제할 수 없다는 보도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의 권리를 공표하는 것이 시민들이 변화를 구체적으로 감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물론 가이드라인 공표 등도 서울시장과 대통령의 반인권 성향을 고려하면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다. 결국 흡리스인권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일과 정치를 바꾸는 일이, 인권의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일은 병행되어야 한다.

7) 4조 (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토론 4

공공장소와 장애시민권

재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공공장소와 장애인인권

- 접근권부터 저항권까지, 공공성은 어디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재민

공공장소의 공공(公共)에서 배제된 존재들

- 더 효율성 높게, 더 편하게
- 지하보도, 육교, 보도, 버스정류장,

제거되고 잊혀지는 또 다른 시민들

- 누군가의 자유로운 이동이 타자의 존재를 제한, 은닉, 심지어 부정하는 이동의 체제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주의의 역사(Kotef, 2014)

- 현대 서구 사회가 이동과 모빌리티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특정한 몸과 특정한 모빌리티 방식과 특정한 이동을 우선시하는 헤게모니적 사고방식(Imrie, 2003)

- 어떤 이동은 가능하게 하면서, 다른 이동은 방해하는 정당하지 않은 모빌리티 체제 (Mimi Sheller, 2012)



- 마련되어 있어도 편견과 차별로 계속 배제되는 공공(公共)



권력에 따라 달라지는 법과 규칙

- 정치후보들의 캠페인 VS 전장연의 침묵 시위
- 서울교통공사 캠페인 문구 VS 장애인권리예산 스티커



철도안전법 하나하나 뜯어보기

□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장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전문개정 2012. 6. 1.]

아무런지 않게 일어난다는 경찰과 교통공사의 담합

폭력.



서울교통공사는 누구인가?

분노하는 시민들, 가시화되는 혐오

윤광민
단연히저상버스는축소하는거지.계단버스에만집중투자하는거다!!!
2일 좋아요 답글 달기 메시지 보내기 숨기기

윤광민
저상버스축소하고.공공버스.대광위버스.대패차시에는계단버스비요.충남형M버스.세종M버스에집중 투자하는거다!!!
2일 좋아요 답글 달기 메시지 보내기 숨기기

윤광민
저상버스당연히축소해야지.
6일 좋아요 답글 달기 메시지 보내기 숨기기

신정현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정부는 2025년도 예산을 확보하라.
1주 좋아요 답글 달기 숨기기

윤광민
2025년도에는.절대로예산절대로확보없다.한평생!!
2일 좋아요 답글 달기 메시지 보내기 숨기기

윤광민
공공버스나.대광위버스.대패차시에는계단버스교체비용.충남형M버스지원비용.세종M버스지원비용에집중투자한다!!

남보라
그만하세요 제발 장애인 보는 시선 더욱 따갑습니다
1주 좋아요 답글 달기 숨기기

답글 1개 보기

Lim Linda
ㅋㅋㅋㅋㅋㅋ 코메디하냐?
1주 좋아요 답글 달기 숨기기

김정호
이 새끼들 강제추방을 당해야하는데 ...
1주 좋아요 답글 달기 숨기기 6

Andre Yoon
어디서든 환영은 못받노 ㅋㅋㅋㅋㅋ
1주 좋아요 답글 달기 숨기기 2

Terry S Jung
강제 추방 안 시키고 모하노? 프랑스 경찰 일 안하내
1주 좋아요 답글 달기 숨기기 5

차별에 저항하고 차별을 드러내는 투쟁

함께하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공시설

